

의안번호	2210572
의 퇴 인	허성무 의원
회 답 일	2025. 8. 14.
추 계 번호	25A298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전기위원회 기능 확대>			
1	안 제7조제2항 (전기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 (사업의양수및합병의분할합병등), 제12조제1항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제2항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요금등), 제16조제2항 (전기의 공급약관), 제18조제3항 (전기품질의 유지), 제23조제1항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제1항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장), 제27조의2제5항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33조제2항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4조제4항 (차액계약), 제43조제3항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조의2제3항 (중개시장운영규칙), 제53조제1항 (전기위원회의 설치),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호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전기위원회를 <u>심의기구</u> 에서 <u>심의·의결기구</u> 로 변경: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및 합병, 전기사업자의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등 현행법상 전기위원회의 <u>심의</u> 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u>심의·의결</u> 을 거치도록 함	의무규정
2	안 제45조의2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감독), 안 제56조제1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신설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감독원에 대한 전기위원회의 감독 기능 확대: 자료 제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변경 조치 명령 등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53조제4항 (전기위원회의 설치)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의무규정
4	안 제55조의2 신설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법률에 명시 1.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전력시장 및 전기사업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및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관한 사항 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의무규정
<한국전력감독원 설립 및 자금 지원>			
5	안 제27조의2제6항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49조제10호의3 (기금의 사용), 제60조의2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등), 제60조의3(사무소), 제60조의6(업무), 제60조의7(운영재원), 제60조의8(출연금) 신설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촉진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개발 및 기술지원과 위반행위 감시·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 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지원 2. 제21조 ¹⁾ 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감시·평가 및 조사 3. 제16조의2 ²⁾ 에 따른 전기신사업자의 약관의 요건 조사 4. 제27조의2제6항 ³⁾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송전사업자의 설비의 보장 및 유지보수 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및 이행관리 지원 6. 배전사업자가 「탄소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8조 ⁴⁾ 에 따라 제출하는 배전망 증설·운영 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및 이행관리 지원 7. 송전·변전 전기설비의 보안에 관한 지원 8. 제57조 ⁵⁾ 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재정에 대한 지원 9.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10.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정보공개 1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 및 국제협력 12.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분석 보고서의 발간 13. 다른 법령에 따라 전력감독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4. 그 밖에 전력감독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한국전력감독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원,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	

1) 「전기사업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들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들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5. 전기사업자들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전기사업법」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이하 각 목 생략)
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
4. 요금 및 이용조건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5. 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안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전력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8조(배전망 증설·운영 계획의 제출 등)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사업지역 안에 설치 또는 운영되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용에 필요한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5) 「전기사업법」

제57조(전기위원회의 제정)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제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에 따른 비용(설비 이설 등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토지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토지 지상·지하공간 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제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과징금 인상 및 벌금 신설>			
6	안 제12조제5항 (사업허가의 취소 등)	허가권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정지 요건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하는 경우 전기사용자 등에 게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징금 상한액 상향: (현행) 5천만원 → (개정안) 5억원	재량규정
7	안 제102조제1항제6호 (벌칙) 신설	제60조의12 ⁶⁾ 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재량규정
8	안 제108조제1항제8호의2 (과태료) 신설	제60조의11 ⁷⁾ 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무규정

6) 안 제60조의12(비밀누설 등의 금지)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안 제60조의1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력감독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전기위원회 기능 확대>		
1	안 제7조제2항 (전기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 (사업양수및합병의분할합병등), 제12조제1항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제2항 (송전배전용전선설치비용요금등), 제16조제2항 (전기의 공급약관), 제18조제3항 (전기품질의 유지), 제23조제1항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제1항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27조의2제5항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33조제2항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4조제4항 (차액계약), 제43조제3항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조의2제3항 (중개시장운영규칙), 제53조제1항 (전기위원회의 설치),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호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2	안 제45조의2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감독), 안 제56조제1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신설	
3	안 제53조제4항 (전기위원회의 설치)	
4	안 제55조의2 신설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	
<한국전력감독원 설립 및 자금 지원>		
5	안 제27조의2제6항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49조제10호의3 (기금의 사용), 제60조의2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등), 제60조의3(사무소), 제60조의6(업무), 제60조의7(운영재원), 제60조의8(출연금)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과징금 인상 및 벌금 신설>		
6	안 제12조제5항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안 제102조제1항제6호 신설(벌칙)	
8	안 제108조제1항제8호의2 신설(과태료)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①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전기위원회를 현행 심의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변경하면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감독원에 대한 감독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②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운영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③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을 상향·신설하는 내용
- 개정안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인력이 증원되거나,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열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더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①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 ②전력시장 및 전기사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 ③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및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이 경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유관부서(전력정책관 등)가 실시하고 있는 사무가 전기위원회로 이관되고 전기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이 증원되는 등 인력이 순증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전기위원회가 개정안에 따라 설립될 한국전력감독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재정사업이 실시되어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안 제60조의7⁸⁾은 한국전력감독원의 운영재원 중 일부로 정부의 출연금

8) 제60조의7(운영재원)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및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0조의8⁹⁾은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한편, 개정안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액이 증가하거나, 신설된 유사명칭 사용 및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경우 국가 재정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 안 제12조제5항¹⁰⁾은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전기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안 제102조제1항제6호¹¹⁾는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8조제1항제8호의2¹²⁾는 한국전력감독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징금 및 벌금·과태료가 징수될 경우 국가 재정수입(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순 재정부담은 재정지출의 증가액에서 재정수입의 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내 업무 이관 및 인력 순증 규모, 확대 또는 신규 실시될 재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한국전력감독원의 정원 등 설립 규모, 과징금 및 벌금·과태료의 부과 건수·액수 등을 알 수 없어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에 따라 전기위원회 사무국 조직이 확대된다고

9) 제60조의8(출연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0)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11) 제10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6. 제60조의1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12)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의2. 제60조의11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전제하면,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에서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와 인력이 전기위원회 사무국으로 얼마나 이관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순증 인원을 산출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필요 인력을 추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한국전력감독원이 신설되면 이를 감독하는 업무 또한 개정안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수행하게 되므로 담당 인력이 증원되거나 새로운 재정사업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감독 업무에 필요한 인원수와 재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한편, 새로 설립될 한국전력감독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 편성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소관 업무를 바탕으로 기관의 정원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현 시점에서 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수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음

— 참고로, 2014년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전력계통 감독원 설립)의 법안이 심사된 바 있는데¹³⁾,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감독원의 정원을 총 49명, 운영 예산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547억원으로 추정하였음

* [참고자료] 전력계통감독원 인력 및 운영예산 추정안(산업통상자원부)

— 다만, 위 전력계통감독원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된 반면, 개정안에 따른 한국전력감독원은 해당 업무 외에도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전기위원회의 재정(裁定) 지원 등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정책·제도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과거 논의된 전력계통감독원보다 조직 규모가 더 크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운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과징금 및 벌금·과태료 부과 수입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의무 위반행위의 건수와 1건당 부과액을 바탕으로 산출될 것이나,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재정수입 증가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3) 의안번호 제1907277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0.14. 이현재의원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었으나, 전력계통감독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이견이 있어 의결되지 않았음(임기만료폐기)

- 이에 개정안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에서, 과징금 및 벌금을 상향·신설하는 데 따른 재정수입을 차감한 추가재정소요(순 재정부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전력계통감독원 인력 및 운영예산 추정안(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된(2013.12.16., 2014.2.19., 2014.12.2. 등)
전력계통감독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907277호, 2013.10.14. 이현재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시 추정한 업무 및 인력, 운영예산 내역임

□ (업무) 전력계통 신뢰도기준 조사·평가·자문, 전력계통 운영의 적절성
 실시간 감시, 전력계통 사고·고장 원인분석 등

□ (인력) 총 49명

조직명		직무내용	인원(명)
감독원장		총 관	1
성과감사팀		감사, 내부평가, 혁신, 윤리경영 등	3
경영기획실		전략기획, 국회/정부, 총무, 재무, 인사/교육, 법무/노무, 내부시설 관리 등	6
개발 본부	계통기준실	- 계통신뢰도기준 개발 및 운영·관리 - 계통신뢰도 평가지수 개발, 전기품질 분석·관리	10
	계통감시실	- 계통운영의 적절성 실시간 감시(교대근무 4명) 신뢰도기준 준수 감사 및 조치	7
	정보보안실	EMS, MOS, SCADA, RTU 등 사이버보호 기준 수립 및 점검, 감독원 전산설비 보안 총괄	5
평가 본부	평가분석실	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성 평가 수요예측, 장단기 계통신뢰도 평가, 계통DB관리	8
	고장조사실	계통사고 및 설비고장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전력설비 안전 관리, 고장데이터 관리	5
	자격증운영실	계통운영요원 자격인증제 운영	4
계			49

□ (운영예산) 설치 이후 5년간 547억원 소요 예상(연평균 109.4억원)

(단위: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준개발	12	3	3	3	3
기관운영	98	105	102	109	109
계	110	108	105	112	112